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한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조명식 예산분석관
안은주 예산분석관
이동현 예산분석관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장유진 행정실무관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I. 예산안 개요 / 5

- 1. 현 황 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

II. 주요 사업 분석 / 9

〈일반회계〉

- 1. 국회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 17

- 1. 현 황 1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II. 주요 사업 분석 / 20

〈일반회계〉

1. 인건비 증액 규모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운영 필요 20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27

1. 현 황 2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9

II. 주요 사업 분석 / 30

〈일반회계〉

1.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에 기반한 보수·보강 예산 편성 필요 30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37

1. 현 황 3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9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45

1. 현 황	4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1

II. 주요 사업 분석 / 52

〈일반회계〉

1. 공소청 예산안의 문제점	52
1-1. 공소청 예산안의 독립 편성 및 국회 심의 필요	54
1-2. 공소청 인건비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57
2. 국가배상금 예산안의 규모 검토 필요	60
3. 대한법률구조공단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66
4.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사업의 공사 절차 이행 필요	69
5. 사회통합프로그램 방문형 교육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72
6. 민원·정책 피드백 국외여비 사업 관리 강화 필요	75
7.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의 적절성 검토 필요	79
8. 법 개정과 연계한 마약류 유통자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84
9. 전자공증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88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 93

1. 현 황	9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4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97

1. 현 황	9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 예산안 개요 / 101

1. 현 황	1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2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 105

1. 현 황	10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7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111

1. 현 황	1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6

II. 주요 사업 분석 / 117

〈일반회계〉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17
2.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 분담금의 국제기구별 실제 파견조건 및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21
3.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예산의 적정성 검토	12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1

현황

국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49억 8,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3,000만원(7.1%)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599	4,657	4,657	4,987	330	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8,478억 4,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77억 6,000만원(4.7%)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55,105	810,089	810,089	847,849	37,760	4.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사무처

한편, 국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2027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및 국회 운영기반 확충을 위해 ① 의원외교활동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127억 3,600만원 → 2027년 132억 400만원), ② 국회방송운영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169억 3,900만원 → 2027년 179억 3,800만원), ③ 국회미래연구원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51억 7,200만원 → 2027년 64억 5,000만원), ④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6년 20억 2,600만원 → 2027년 187억 6,800만원), ⑤ 2026년 1월 설립된 국회기록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2027년 123억 2,100만원).

2027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지원시설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123억 2,100만원 규모이다.

해당 신규사업들은 국회기록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기록원운영관리, 기록원정보화),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반영한 사업이다.

[국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기록원운영관리	3,776
	기록원정보화(정보화)	1,899
	(기록원) 인건비	5,795
	(기록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851
합 계		12,321

자료: 국회사무처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의원외교활동, 국회방송운영, 국회미래연구원, 연수활동지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등이 있다.

① 의원외교활동 사업은 방문외교를 확대하고 환율상승분을 일부 반영함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 국회방송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예산을 2025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공무원근로자의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였으며, ③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외교안보전략연구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④ 연수활동지원 사업은 AI 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과 공무원근로자의 처우개선분이 증액되었고, 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가 대폭 반영되었다.

[국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의원외교활동	12,736	12,736	13,204	468	3.7
	국회방송운영	16,939	16,939	17,938	999	5.9
	국회미래연구원	5,172	5,172	6,450	1,278	24.7
	연수활동지원	5,404	5,404	6,261	857	15.9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026	2,026	18,768	16,742	826.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가. 현 황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¹⁾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건립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228	258	258	258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행복청 소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편성되는 구조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내에 행복청 소관 사업으로 2019년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4억 5,500만원 증액된 1,19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033-303

[2027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40	95,640	95,640	119,095	23,455	24.5
건설보상비	-	72,862	72,862	61,523	△11,339	△15.6
기본조사설계비	-	22,778	22,778	56,424	33,646	147.7
시설부대비	-	-	-	1,148	1,148	순증
일반연구비	340	-	-	-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분석의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공공청사 중심 건축물과 지원시설을 구분하여 각각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와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지원시설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업계획 조정 등을 검토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021년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이후 입지 선정, 총사업비 협의 등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신설하고, 건축·도시·행정 등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주요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18.1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최초예산 반영(국회증액)
2020.06.	총사업비 등록(1,166억원)
2021.1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2021.12~ 2022.10.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추진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선정('22.04)
2023.0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2023.10.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24.1. 시행) * (위치) 세종동, (부지면적) 63.1만㎡, (이전대상) 11개 상임위+예결위+예정처·조사처 등
2023.12.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09.	제1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 전문가, 국회사무총장(당연직), 국회의원 4인 등 15인으로 구성
2024.11.	사업추진방식 결정(실시설계 기술제안) * 설계공모 당선자가 기본·실시설계 진행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설계서대로 시공
2024.12.	총사업비 조정(1차)(사업기간 조정)
2025.01.	총사업비 조정 요구(제6차 건립위에서 요구 금액 결정, 약 5.6조원)
2025.05.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재조사 착수
2025.07.	총사업비 조정(2차) (건설보상비 반영 및 사업기간 조정)
2025.08.	국회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선정·운영
2026.0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건물 총사업비 조정(3차)(37,415억원)
2026.01.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공고
2026.05.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 및 전시회
2026.08.	KDI, 타당성재조사 관련 종합평가 결과 ‘타당성 미확보’로 결정
2026.09.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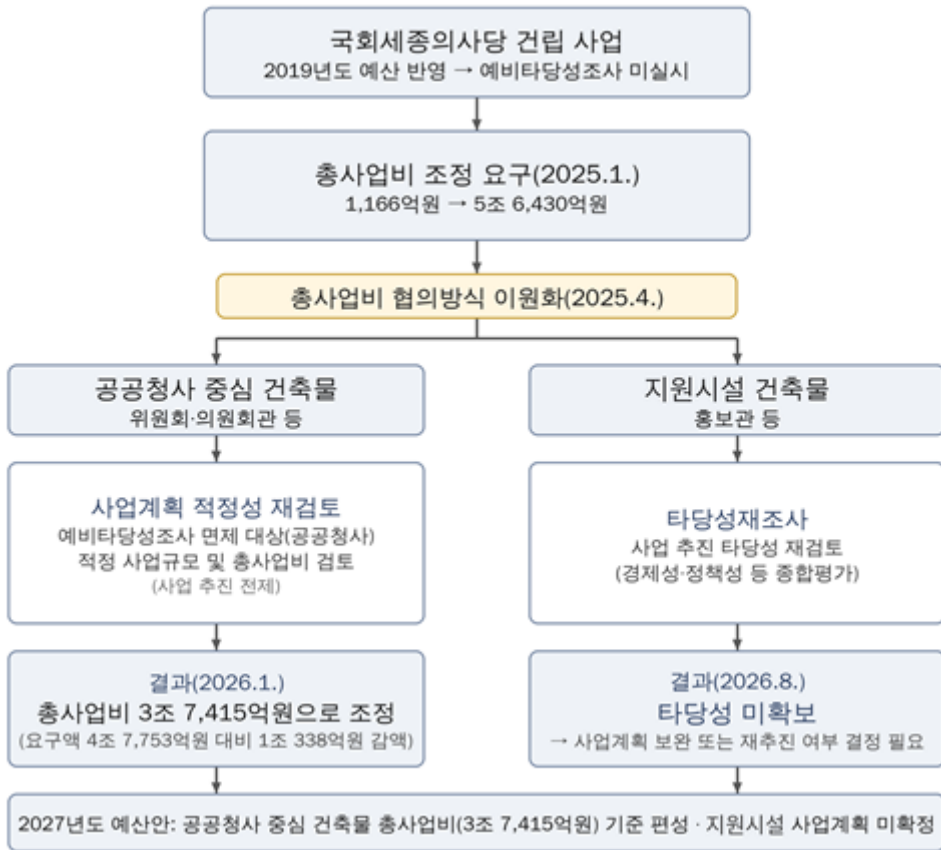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²⁾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0년 1,166억원으로 등록된 후 국회사무처가 2025년 1월 5조 6,430억원으로 조정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4월 총사업비 협의방식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타당성재조사로 이원화되었다.

위원회·의원회관 등 공공청사 중심 건축물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적정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홍보관 등 지원시설은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재조사 관련 주요절차]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공공청사 중심 건축물의 총사업비는 국회사무처 요구액 4조 7,753억원보다 1조 338억원 감소한 3조 7,415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7년도 행복청 소관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사업 예산안도 이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다만, 지원시설의 경우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확정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2026년 8월 말 지원시설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립 사업 추진에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

3)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8.26.) 심의에서 종합평가 결과 “타당성 미확보”로 결정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이번 타당성재조사는 6개 지원시설⁴⁾의 건립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 편의상 부지를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이는 실제 사업부지의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6개 시설의 건립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법지원시설로서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사업부지를 631,0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사업부지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시설의 건립 여부와 별개로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기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지원시설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시설의 기능과 규모,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고, 건립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홍보관, 게스트하우스, 교육시설, 국회박물관, 국제문화관, 실내체육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 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4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57	274	274	274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265억 1,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3억 6,900만원(20.3%) 증가하였다.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4,488	105,148	105,148	126,517	21,369	2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되었고(2026년 448억 4,400만원 → 2027년 545억 2,100만원), ② 기본경비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6년 224억 2,300만원 → 2027년 268억 2,500만원), ③ 사업비는 국정운영관리 사업과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다(2026년 378억 8,100만원 → 2027년 451억 7,100만원).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호봉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및 인력 충원 소요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전년 대비 21.6% 증액되었으므로, 인건비 증액 규모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운영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등이 있다.

①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율,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인건비	44,844	44,844	54,521	9,677	21.6
	국정운영관리	7,754	7,754	11,615	3,861	49.8
	시설관리 및 개선	4,793	4,793	7,391	2,598	54.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인건비 증액 규모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운영 필요

가. 현 황

인건비 사업¹⁾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억 7,700만원이 증액된 5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건비	32,113	44,844	44,844	54,521	9,677	21.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7년도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근무수당 제도 개편, 인력 충원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6% 증액 편성되었는데, 과거 인건비 집행과 같은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증액 규모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01-100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의 증가율은 21.6%로 같은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3.9%)보다 17.7%p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7년도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외에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운영 정상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인건비 주요 증액소요]

- 쏠부처 공통 처우개선을 적용: 약 26억원
 - *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 호봉상승 등 자연증가분 2% 수준
-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소요: 약 44억원
 - * 月 3억원 수준 추가 소요 발생 예상 (15개월분)
 - * 월 인정시간 상한 확대(월 67 → 100시간), 지급대상 확대(5급 이하 → 3~4급 행정관)
- 5년간 인건비 동결로 인한 인력운영 차질 일부 해소: 약 27억원
 - * 25~30명 수준 인력 충원 소요

주: 1. 지난 5년간 정원 대비 현원을 축소 운영해 온 실적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면서 그간 인건비 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해왔는데, 이번에 인력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그동안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부분(약 27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대비 5~10% 수준의 결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편집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이 폐지되고,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되나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의 상한인 월 100시간이 폐지되었으며, 복수직 4급에 대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령시의 제재조치는 종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주요 개정 내용(2026.10.1. 시행)]

구분	현행	개정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인정 * 현업 공무원 및 재난재해 대응 시 상한 없이 일한 만큼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상한(4시간) 폐지 → 실제 근무한 시간 인정 ■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상한 폐지 → 실제 근무한 시간 인정
복수직 4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 지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월 25시간 초과분 보전)
부정수령 시 제재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결 요구 기준 : 2회 이상 부정수령 적발 시 ■ 부정수령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 상향 ■ 현행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형사고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결 요구 기준 : 2회 이상 부정수령 + 1회 부정수령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 시 ■ 부정수령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 상향 ■ 「공무원보수지침」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명시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9.1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편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초과근무보전수당 대상이 되는 4급 상당 인원의 비중이 높아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²⁾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원보다 적은 현원 운용으로 그동안 인건비 증가율이 낮았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운용 활성화에 따라 인건비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처의 설명에도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2)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될 수 있는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인원은 대통령비서실 정원 444명 중 352명, 국가안보실 정원 44명 중 25명,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원 4명 중 3명이다.

3) 최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인건비 인상률은 2.1%(24년), 0.0%(25년), 3.5%(26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24년), 3.0%(25년), 3.5%(26년) 이하이다.

다만, 최근 4년간 인건비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내년도 인건비도 증액 규모에 맞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집행 부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42,428	42,428	-	△140	-	42,288	36,623	86.3	86.6	-	5,665
2024	43,328	43,328	-	-	-	43,328	37,840	87.3	87.3	-	5,488
2025	43,328	43,328	-	-	-	43,328	32,113	74.1	74.1	-	11,215
2026	44,844	44,844	-	-	-	44,844	25,484	56.8	56.8	-	-

주: 2026년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거와 같은 인건비 예산의 과다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에 맞는 인력 충원 및 운영을 통하여 집행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5,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9,600만원(71.6%) 감소하였다.

[2027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18	553	553	157	△396	△71.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356억 6,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억 600만원(2.7%) 증가하였다.

[2027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5,077	132,162	132,162	135,668	3,506	2.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25년 12월 청와대 이전에 따라 2026년에 추진한 청와대 경비시스템의 고도화가 완료됨에 따라 청와대 경비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고(2026년 116억 5,900만원 → 2027년 62억 1,100만원), ② 소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필요성을 반영하여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188억 3,500만원 → 262억 9,000만원), ③ 2026년 특수운전훈련장 완공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2026년 29억 1,300만원 → 40억 1,600만원).

2027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소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의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등이 있다.

①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은 경호업무 수행 부속출동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미흡(D)'으로 결정됨에 따라 긴급 보수를 위한 공사비 예산이 반영되었고, ②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은 2026년 10월에 완공되는 특수운전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2개)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8,835	18,835	26,290	7,455	39.6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913	2,913	4,016	1,103	3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II

주요 사업 분석

1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에 기반한 보수·보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¹⁾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0,081	10,915	10,915	11,659	744	6.8
시설장비유지비	32	277	277	1,449	1,172	423.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소관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2027년도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설물별 안전상태와 구체적인 보수·보강 수요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안전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시설물별 보수·보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11-251

2026년 초 경호장비 보관 및 출동인원이 상주하는 업무시설에서 천장 구조물 부식 및 피복 단락이 확인되었다. 해당 시설은 1997년 준공되어 29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해당 현상 확인 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비 등 39억 6,600만원을 2027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에 신규 반영하였다.²⁾

이와 함께 소관 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전반의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규모를 2억 7,700만원에서 14억 4,9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보수·보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2027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역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보다는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토대로 한 개략적인 수요 파악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상태 등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참고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구분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 제1종, 제2종, 제3종 ³⁾
정밀안전점검 (2~4년)	• 제1종, 제2종, 제3종(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E)
정밀안전진단 (4~6년)	• 제1종, 제2종(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E)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 재해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경우 등

주: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8]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구분됨

자료: 시설물안전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통령경호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는 연차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⁴⁾ 구체적으로는 1·2년차에는 청와대 노후 건축시설, 3·4년차에는 출동대기시설, 5년차에는 기타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련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수·보강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⁵⁾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적용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4) 대통령경호처는 1·2년차에는 청와대 노후 건축시설, 3·4년차 출동대기시설, 그리고 5년차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직접적인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목과 성격이 구분되므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비목별 적용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설물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2,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500만원(114.0%)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	57	57	122	65	114.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460억 1,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억 4,500만원(4.9%)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972	43,869	43,869	46,014	2,145	4.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202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26년 4월 국가인권교육원이 개원하여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2025년~2026년 중점 투자 대상이었던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였고(2026년 33억 6,600만원 → 2027년 21억 3,900만원), ② 인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세부사업으로 중점 투자 대상을 전환하여 이를 증액하였다(2026년 10억 8,700만원 → 2027년 14억 2,5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7년도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인권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기본경비에 있던 예산을 단순 이관한 것으로 새로운 세부사업 편성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이 있다.

① 202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대응 내역사업이 증액되었고, ② 인권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인권경영·인권실사 매뉴얼 갱신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 반영되어 기업과 인권 정책개발 내역사업이 증액되었고, ④ 기후위기와 인권정책개발 내역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편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87	1,087	1,425	338	31.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특별회계) 및 1개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6,23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억 9,700만원(0.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5,497억 2,9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73억 2,1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9억 5,000만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546,366	1,616,153	1,616,153	1,617,050	897	0.1
- 일반회계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897	0.1
- 교도작업특별회계	64,546	67,321	67,321	67,321	0	0.0
기 금	6,946	5,950	5,950	5,950	0	0.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46	5,950	5,950	5,950	0	0.0
합 계	1,553,312	1,622,103	1,622,103	1,623,000	897	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조 4,055억 9,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002억 900만원(14.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2,131억 4,2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826억 5,7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7억 9,900만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705,675	4,601,888	4,602,633	5,295,799	693,166	15.1
- 일반회계	4,635,274	4,523,513	4,524,258	5,213,142	688,884	15.2
- 교도작업특별회계	70,401	78,375	78,375	82,657	4,282	5.5
기 금	90,223	102,756	102,756	109,799	7,043	6.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223	102,756	102,756	109,799	7,043	6.9
합 계	4,795,898	4,704,644	4,705,389	5,405,598	700,209	14.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6,807억 6,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억 4,400만원(0.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5,497억 2,9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310억 3,100만원이다.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897	0.1
교도작업특별회계	134,667	130,284	130,284	131,031	747	0.6
합 계	1,616,487	1,679,116	1,679,116	1,680,760	1,644	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4,296억 3,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839억 4,500만원(14.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2,986억 2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310억 3,100만원이다.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724,036	4,614,659	4,615,404	5,298,602	683,198	14.8
교도작업특별회계	134,667	130,284	130,284	131,031	747	0.6
합 계	4,858,703	4,744,943	4,745,688	5,429,633	683,945	14.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37억 9,600만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113억 4,600만원(7.8%) 감소하였다.

[202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9,813	145,142	145,142	133,796	△11,346	△7.8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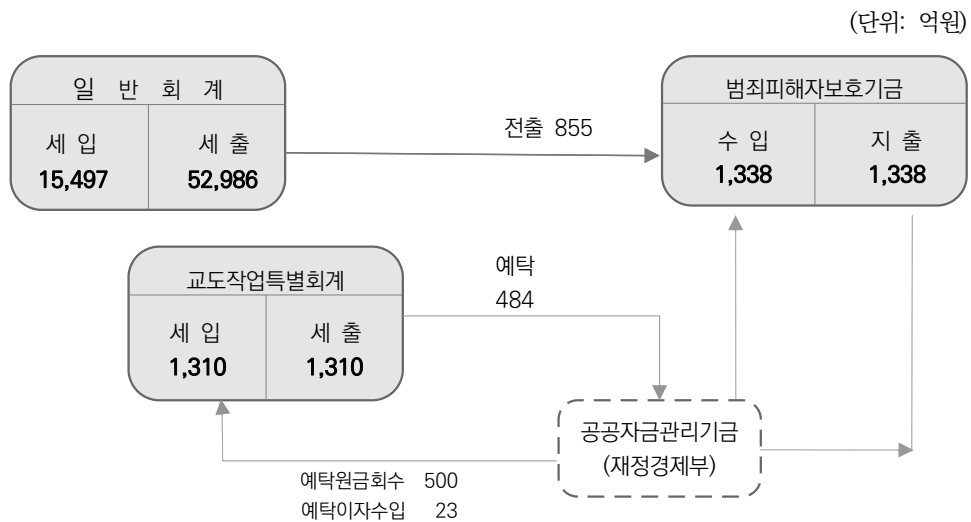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55억원이 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84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 523억원을 회수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855억원이 전입된다.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2027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류 수용동 환경개선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129억원), ②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1,448억원 → 2027년 8,400억원) ③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이 증액되었고(2026년 76억원 → 2027년 98억원), ④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확충하였으며(2026년 116억원 → 2027년 140억원), ⑤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외국인 인재를 적시·적정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1개소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15억원).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이 지자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배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담 비율이 미정인 상태이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비상대기소 모듈러 도입 사업을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비상대기소 모듈러는 특정 지역에 고정하여 설치되고 기초공사, 설치·조립,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비용이 함께 수반되므로, 공사비, 감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는 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과 산업단지 등 근로 외국인에 대한 방문형 한국어 교육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문형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여부에 따라 교육 시행 여부가 좌우되므로 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정보화기기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크루즈 관광상륙을 법 개정 전제라는 이유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허가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2027년 예산안에 이를 확대 도입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확대 추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무부는 전자공증의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이 감소하고, 인지도가 저조함에도 연례적으로 신문·인터넷 광고와 책자 발간 등 동일한 방식과 금액으로 전자공증제도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용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 방식 및 대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사업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법무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389억원 규모이며, 기존사업 분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7,089
	소년범죄예방	26,043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3,887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정보화)	1,847
합 계		38,866

자료: 법무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배상금 지급,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공판활동지원,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특별감찰활동 등이 있다.

①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사업은 국제법무 AI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었고, ② 공판활동지원 사업은 열람등사센터 재구축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③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AI 영상감지 시스템, AI 생체감지 레이더 신규 도입과 교정 시설 내진 보강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법무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국가배상금지급	144,835	144,835	840,000	695,165	480.0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510	510	693	183	35.9
	공판활동지원	1,992	1,992	3,455	1,463	73.4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91,557	91,557	133,225	41,668	45.5
	특별감찰활동	404	404	1,294	890	22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1

공소청 예산안의 문제점

공소청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출범하는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법무부의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형사사법국) 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7년 검찰국의 예산안으로 공소청시설운영, 검사국의 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합산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9억 9,500만원이 감액된 1조 86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3-300 등

[2027년도 법무부 검찰국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검찰국 소관 예산	1,255,565	1,253,690	1,253,690	1,086,695	△166,995	△13.3
공소청시설운영	79,670	83,131	83,131	78,507	△4,624	△5.6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57	7,937	7,937	8,571	634	8.0
법과학인프라구축	11,549	11,410	11,410	9,449	△1,961	△17.2
국제형사협력지원	2,498	2,128	2,128	2,100	△28	△1.3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23,445	31,381	31,381	29,262	△2,119	△6.8
첨단기술융합형차세대 Forensic기술연구개발(R&D)	2,361	2,200	2,200	1,980	△220	△10.0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	32,786	29,633	29,633	27,613	△2,020	△6.8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협력(정보화)	9,765	12,286	12,286	8,021	△4,265	△34.7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80,983	87,824	87,824	72,672	△15,152	△17.3
공판활동지원	1,592	1,992	1,992	3,455	1,463	73.4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7,078	6,620	6,620	7,233	613	9.3
형사보상	127,454	44,000	44,000	46,000	2,000	4.5
형사법정비	218	349	349	453	104	29.8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820,474	883,665	883,665	751,659	△132,006	△14.9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30,298	31,524	31,524	28,171	△3,353	△10.6
형사사법국기본경비(총액)	409	461	461	470	9	1.9
형사사법국기본경비	735	852	852	852	-	-
공소청운영기본경비	16,293	16,297	16,297	10,227	△6,070	△37.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1-1. 공소청 예산안의 독립 편성 및 국회 심의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공소청이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의 예산안을 검찰청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같이 법무부 내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형사사법국)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공소청 예산안을 검찰청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소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을 독립 편성하는 중앙관서에 해당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예산안을 독립하여 편성하므로, 공소청도 예산안을 독립 편성하고 국회에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청의 업무 중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은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 및 수사 관련 개편사항]

2026년 10월 2일 전	→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공소청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중수청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등)

자료: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안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¹⁾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보고 있다.²⁾

2025년 10월 1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정부조직법」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규정하여,³⁾ 공소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중앙관서이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⁴⁾를 바탕으로 검찰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정부조직법」상 19개 청 중 공소청만 유일하게 분리하지 않고 부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관서의 예산안 편성 관련 법규정]

법률명	내용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자료: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재구성

- 1)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3)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검찰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이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⁵⁾ 검찰청의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려면 입법을 통해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⁶⁾⁷⁾

그러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소청법」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현행 「국가재정법」상으로도 공소청은 중앙관서에 해당하므로 별도 입법 절차 없이 현행 「국가재정법」 및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청 예산안을 법무부 사업으로 포함하여 편성한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다른 중앙관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을 독립된 소관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공소청이 수행하는 사업을 기관 단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제20대 국회 제371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소위원회) (2019. 09. 18.) 회의록 p.71

6) 제20대 국회 제371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19. 11. 20.) 회의록 p.25-31

7) 또한 법무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존 방식을 유지(제17대 국회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2006. 04. 13.) 회의록 p.8)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청 예산의 독립 편성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1-2. 공소청 인건비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¹⁾은 공소청 내 검사 및 본청, 광역·지방·지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경우 검찰청과 동일한 2,292명을, 공무원의 경우 검찰청에 비해 2,295명 감한 6,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검찰청 대비 공소청의 인력(예산안 기준) 현황]

	검찰청(2026년)	→	공소청('27년 예산안)
검사	2,292명		2,292명
공무원	8,415명		6,120명(△2,295명)

주: 1) 검찰청의 경우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이에 따라 2027년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20억 600만원이 감액된 7,5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820,474	883,665	883,665	751,659	△132,006	△14.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02-101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입법예고 직제안의 정원을 기준으로 공소청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직제가 수정되어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검사 정원도 감축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소청 출범 시점의 현원이 확정된 정원과 상이하므로 정원 감축과 실제 인력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직제안은 공소청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중 검사 정원 등과 관련하여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년 9월 법무부는 직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정원이 예산안 편성 기준인 6,120명에서 230명 감소한 5,890명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경우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용역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직제 대비 수정된 공소청의 정원 현황]

	입법공고 직제(예산안 편성 기준)		수정된 직제
검사	2,292명	→	2,292명
공무원	6,120명		5,890명 (△230명)

주: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8월 및 9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공무원 중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할 특례임용자를 모집하였고, 총 1,962명이 지원하여 총 1,837명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소청 출범(2026년 10월 2일)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 대비 368명이 부족하고, 공무원 현원은 6,799명으로 변경된 직제 대비 909명이 많은 상황이다.²⁾

이에 따라 검사 현원(1,924명)은 정원(2,292명)에 비해 부족한데, 검사의 인건비는 정원 2,29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그 결원분(368명)에 대해서는 불용 우려가 있다.

또한 직제상 공무원 정원은 5,89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공소청 출범 기준 현원은 6,799명으로 직제와 909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 인원은 부칙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상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³⁾ 이전 추이를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희망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 규모와 시기를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입법공고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직제와 출범 시점 현원과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예산안은 입법공고 직제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확정된 직제 및 검사 결원 현황, 중대범죄수사청 이전에 따른 현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직제 조정 취지에 맞게 초과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 결원 및 정원 조정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이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718호) 부칙

제4조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가. 현 황

배상금 사업¹⁾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배상금 지급’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배상금(310-02)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세부사업에는 그 외에 ‘소송비용’이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51억 6,500만원 증액된 8,4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배상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배상금 지급	437,279	144,835	144,835	840,000	695,165	480.0
배상금	436,364	143,895	143,895	839,060	695,165	483.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과 향후 제기될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법의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 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가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과거사 사건의 금액 및 비율이 연례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금액 중 과거사 사건의 비율이 2023년에는 56.7%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75.3%, 2025년에는 95.9%에 달하였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94.8%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현황(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8.
전체 (A)	1,379	1,077	4,373	3,830
과거사 (B)	782	811	4,193	3,631
과거사 비율 (B/A)	56.7	75.3	95.9	94.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추이를 반영하여 2027년 배상금 예산안을 6,951억 6,5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²⁾이 발의된 상황이다.

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39,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222144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해당 법률안은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의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을 말한다.
보상금 지급	제5조(보상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u>보상금</u> 을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u>보상금</u> 을 지급한다.
소송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② 이 법에 따른 <u>보상금의 지급결정</u> 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 <u>민사소송법</u> 」에 따른 <u>재판상 화해</u>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u>보상금등의 지급 결정</u> 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 <u>민사소송법</u> 」에 따른 <u>재판상 화해</u>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현재는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개별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으나,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송 절차 없이 보상 절차를 통해서도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부분만큼 소송에서 차감 지급되므로 2027년도 배상금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이 지자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배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담 비율이 미정인 상태이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7년 배상금 예산안 편성 시 현재 제기된 사건을 소액사건,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송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에 선고될 사건에 대하여 인용 비율인 50%로 2027년 예산안을 산출하였다.

[2027년도 배상금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 배상금 143,895백만원 가. 법원 판결금 • 336건×402백만원 = 135,05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73건×2.2백만원 = 159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507건×17.1백만원 = 8,677백만원	○ 배상금 839,060백만원 가. 법원 판결금 • 소액사건 1,650백만원 • 단독사건 137,219백만원 • 합의사건 686,12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67건*6,000,000원 = 402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1,415건*13,000,000원= 18,395백만원 ■ 판결금은 27년 선고될 사건에 대한 소가 x 인용률적용 * 소가 1.65조원 × 인용비율 50%

자료: 법무부

또한, 2026년 8월 말 기준 배상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선감학원은 총 28건 269억원을, 형제복지원은 총 49건 189억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과거사 사건별 2026년 국가배상 판결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건수	28	49	20	56
금액	269	189	75	262

주: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런데 형제복지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지는 것으로 판결한 예가 있고,³⁾ 선감학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마찬가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예가 있다.⁴⁾

이와 같이 올해 및 차년도 배상금 중 일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⁵⁾ 현재로서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조항이 유추적용되고(「민법」 제414조), 피해자는 가해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우선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11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4.2. 선고 2024나20431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2.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6.20. 선고 2022가합569301 판결.

5)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와 내부 구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공동불법행위 관련 법무부 협의 현황]

지자체	협의 현황
형제복지원(부산)	부산시와 2차례 실무자급 회의 진행('26.3.9., '26.7.30.)
선감학원(경기도)	경기도와 1차례 실무자급 회의 진행('26.2.24.) '26.9.21. 2차 협의 예정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와 구상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액 일시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게 될 구상금은 세입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대한법률구조공단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여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8억 3,200만원 증액된 68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률구조	62,312	61,240	61,240	71,153	9,913	16.2
대한법률구조공단	60,346	58,526	58,526	68,358	9,832	16.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8개소, 출장소 42개소, 지소 7개소 및 개인회생파산센터 10개소 등 총 77곳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11억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	-	-	1,122	1,12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위해 단가를 880만원으로 책정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한 법원행정처의 도입 단가는 62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²⁾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7년 예산안으로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대당 1,456만 9,000원을 기준으로 77대를 도입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장애인 키오스크 880만원, 표시기 182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도 법무부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사업 예산안 1세트 표준 견적]

(단위: 개, 천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특징)
27인치 장애인 키오스크	1	8,800	8,800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탑재 등
일체형 24인치 표시기	7	260	1,820	창구번호 및 호출번호 시각 표시
천장형 브라켓 설치공사	7	220	1,540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비
창구 호출기(다기능)	7	187	1,309	재호출, 타창구 이관 기능 포함
설치 등 공사비용	1	1,100	1,100	현장 세팅 및 네트워크 연결
소 계			14,569	1개 소당 표준 도입 비용

자료: 법무부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2026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2026년 장애인 키오스크를 도입한 법원행정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단가 620만원으로 도입하여 법무부의 단가 880만원과 2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³⁾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가 차이]

구분	법무부	법원행정처
도입연도	2027년	2026년
키오스크 단가	880만원(예산안)	620만원
차이	260만원	

자료: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키오스크 도입 단가를 참고하여 법률구조공단의 해당 키오스크 도입 단가를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77대에 260만원 차이를 계산하면 총 2억 20만원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반도체 가격 양상에 따른 키오스크 기기 상승을 고려하면 2027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교정장비 현대화 사업¹⁾은 교정시설에 비상대기소 모듈러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 8,200만원이 증액된 40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교정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83,720	91,557	91,557	133,225	41,668	45.5
교정장비 현대화	20,091	22,473	22,473	40,255	17,782	79.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교정시설 비상대기 인력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기소를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인 모듈러 건축 실시로 공기를 단축하여 단기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7년 예산안의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사업은 자산취득비(430-01) 비목으로 10개 기관에 개당 4,500만원의 모듈러를 각 10개 설치하는 것으로 총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	-	-	4,500	4,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1-302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비상대기소 모듈러 도입 사업을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비상대기소 모듈러는 특정 지역에 고정하여 설치되고 기초공사, 설치·조립,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비용이 함께 수반되므로, 공사비, 감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건물 및 공작물 등의 취득비를 자산취득비(430-01)로,²⁾ 건물·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를 공사비(420-03)로³⁾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의 취지는 단순히 완성되어 있는 독립된 물품이나 자산을 구입하는 지출과, 현장에서 설치·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건축물을 조성하는 지출을 서로 다른 성격의 경비로 파악하여 예산과목을 달리 적용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비상대기소 모듈러 건물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한 후, 기초공사, 설치·조립, 연결공사, 전기·통신·기계설비 등의 공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모듈러 유닛 자체는 반제품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실제로 교정시설 비상대기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고정되어 각종 부대공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대기소 모듈러 건물은 이동이나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한 가설건축물과 달리, 해당 교정시설 부지에 고정되어 지속적으로 비상대기 인력의 숙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통상적인 물품·자산의 취득과는 구별된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거나 필요 시 이전·처분이 가능한 반제품 아닌 완제품을 상정하는 반면, 비상대기소 모듈러 건물은 설치와 동시에 특정 부지에 고정되어 해당 위치에서만 그 용도를 다하게 되므로, 기능과 이용 형태 측면에서도 건축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p.296) 1. 적용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취득비

3)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p.291) 1. 적용대상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아울러 모듈러 자체의 구입비 외에 기초공사, 설치·조립,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비용이 함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대공사 비용까지 자산 취득비 하나의 비목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실제 지출 내역과 예산과목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모듈러 도입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공사비 구분]

구분	자산취득비(430-01)	공사비(420-03)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성격	완성된 독립 물품·자산의 구입	현장에서 설치·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건축물을 조성
모듈러	모듈러는 기초공사, 설치·조립,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비용이 함께 수반되므로,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등 성격에 맞는 비목 편성 필요	

자료: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또한, 모듈러 도입비를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면 물품 구입 방식으로 집행되어 공사 관련 계약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설계·감리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은 10개 기관에 각 10개, 총 100개의 건축물을 교정시설 부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공사 관리와 감리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안전과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도, 전기 등 설치비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내역사업인 비상대기소 개보수⁴⁾의 예산을 이용한다고 하나, 모듈러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아니므로 별도 사업으로 각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비상대기소 모듈러 건물이 현장에 고정되어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취득 과정에서 기초공사·설치·조립 및 전기·기계 등 부대시설 공사가 수반되어 지출의 실질이 건축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비목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공사비, 감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4) 2027년 예산안 7억 200만원

가. 현 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¹⁾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9,800만원 증액된 16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3,601	13,955	13,955	17,153	3,198	22.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322	13,640	13,640	16,838	3,198	23.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과 산업단지 등 근로 외국인에 대한 방문형 한국어 교육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문형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여부에 따라 교육 시행 여부가 좌우되므로 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기존에 운영해 온 숙련기능인력반 및 조선업반(산업현장 밀착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 두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① 주말반을 확대하고 ②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와 산업단지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3-304의 내역사업

이 중 ② 방문형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는 55개 지역에 2025년 말 기준 83,025명의 등록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주·귀화 심사 시 한국어 요건 충족이 요구되거나 사회통합 운영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참여가 어려워 방문형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과, 조선업 등 산업단지에서 강의 수강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방문하여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026년과 2027년 변경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분	2026년		2027년(안)	
프로그램명	숙련기능인력반 (폐지)	조선업반 (폐지)	일반형 주말반(확대)	방문형(신설)
내용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9)가 숙련인력으로 계속 거주(정주화) 할 수 있도록 교육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 시간대 활용 교육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조선업 등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요를 접수하여 강사가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
대상자	숙련기능인력 전환대상자 (E-9, E-10, H2), 숙련기능인력 (E-7-4)의 배우자(F-3)	조선업에 종사하는 일반기능인력 (E-7-3, 조선용접공),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타(G-1)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자 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등 전체 체류외국인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산업단지 근무 장기체류 외국인 등
폐지사유	숙련반 대상 외국인의 일반반 참여 등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	수강인원 감소 추세 (25년 8,015명 → 26년 5,365명)를 반영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방문형 프로그램 중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인구감소지역의 희망자의 수요를 받아 약 850회(주중 510회, 주말 340회)를 방문하여 교육하겠다는 계획으로 편성되었는데, 법무부는 방문지 선정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는 5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여부, 교육 장소 및 강사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

또한, 방문 지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강의 장소와 홍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실제 수요자인 등록외국인이 아닌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²⁾

이에 더해 법무부는 방문형 운영 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장소 마련이 어렵거나 강사 수급이 어려울 경우 실시간 화상 교육을 20회 추진할 계획인데, 일반형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도 2026년에도 온라인 화상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수강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므로, 방문형 사업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실시간 화상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와 방문이라는 사업 수행 방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요조사의 시기와 방법, 지자체 협의 및 방문지 선정 일정, 지자체 협조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 화상교육과 기존 일반형 온라인 교육의 관계 등을 포함한 방문형 교육의 세부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법무부 또한 지자체 협의 및 강사 수급 상황에 따라 방문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¹⁾이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하고, 법무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피드백	104	120	120	120	-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지난 6년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에서 해외 선진 민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던 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32-301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는 2013년 12월 출범한 민원담당 조직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1,400만원)이 편성되어 왔으나, 연례적으로 전액이 불용되어 왔고, 2026년도 8월 말 기준으로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²⁾

[국외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		2027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불 용	예 산	결 산	예 산
국외업무여비 (220-02)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	14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민원 관련 기관 섭외가 불발되어 국외여비가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상 계획된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을 섭외 실패 사유로 6년간 전액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의 경우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국외 출장 예정으로, AI 기반 민원 행정 혁신사례를 조사·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10년간 국외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시	국가	예산액	집행액
2016	2016.10.17.~2016.10.25.	호주	17	17
2017	2017.10.14.~2017.11.1.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17	16
2018	2018.10.30.~2018.11.7.	스웨덴, 핀란드	19	17
2019	2019.11.5.~2019.11.13.	캐나다, 미국	18	15
2020	-	-	14	미집행
2021	-	-	14	미집행
2022	-	-	14	미집행
2023	-	-	14	미집행
2024	-	-	14	미집행
2025	-	-	14	미집행
2026. 8.	-	-	14	미집행

자료: 법무부

또한,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별도의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고, 기본경비를 통해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해외 출장의 경우 기본경비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고, 그 외 국제회의의 참가 등 정기적인 방문이 예정된 경우에만 별도로 사업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관련 국외여비 편성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2027년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편성사유
기관운영기본경비(1111-250)	122	국외출장비
청렴권익국제교류(1133-332)	165	반부패 및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여 등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	21	종합청렴도 업무 담당자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에서 매년 종합청렴도 업무 담당자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업 목적과 연계된 국외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계획하여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과거 2010년대 실시되었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개선사항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해외 민원 기관 사전 섭외, 출장 시기·대상국·목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외여비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¹⁾은 크루즈 관광객의 일시적인 한국 관광상륙허가시 자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하는 정보화기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 1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383	41,015	41,015	44,789	3,774	9.2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5,251	-	-	1,630	1,63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정보화기기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크루즈 관광상륙을 법 개정 전제라는 이유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허가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2027년 예산안에 이를 확대 도입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확대 추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크루즈선)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2-305

2)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법무부는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및 기항 횟수 증가로 대면심사만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관광객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5년 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의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우선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27년에는 부산북항에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6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설치항	설치대수	예산액	집행액
2025년	제주항	10대	1,382	1,382
	강정항	28대	3,869	3,869
2027년	부산북항	6대	1,630	-

자료: 법무부

크루즈 자동심사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크루즈터미널에 설치된 무인 심사기기를 통해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이 스스로 심사 및 관광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2027년 증설하려는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크루즈터미널에 설치된 심사대를 통해 무인으로 심사 및 관광상륙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어, 관광상륙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심사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경우 관광상륙허가 절차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보화기기를 통해 심사를 하고 관광상륙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과 관광상륙허가 관련 법규정]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 시	관광상륙허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출국)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보화 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u>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보화 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로</u>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u>출입국관리공무원</u> 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u>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u> .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는 제주항 및 강정항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제로 자동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³⁾ 2건이 발의되었으나, 2026년 9월 기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설치된 38대의 자동심사대에 2인 동시 진입, 단체 관광객 집중 시 운영 혼잡을 틈탄 무단 통과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7년 예산안에 기존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에 보안장치를 보강하는 장치 도입비를 편성하였는데,⁴⁾ 이와 같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비의 운영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심사대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따라서 법무부는 관광상륙허가에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여,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6.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6.7.24.)

4) 2인 감지 센서 총 6억 1,560만원 (심사대 38대 × 1,620만원)

5)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내 크루즈 산업 발전의 적시성, 신속한 심사에 따른 관광객 체류 시간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동출입국 심사대 증설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크루즈 관광상륙허가를 자동출입국심사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관광객의 편의성, 관광객 증가 정도 및 항차당 크루즈 관광객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설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2025년 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7년 예산안에는 부산항에 6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편성하였다.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는 크루즈 입항 시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대면심사만으로는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자동화하여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실질적인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크루즈 관광객 현황상 부산항은 2023년 150,922명(105항차), 2025년 152,743명(208항차)의 관광객이 관광상륙을 하였고, 2026년 1~9월에는 471,160명(328항차)이 관광상륙을 하였다.

인천항은 2023년 12,152명(12항차), 2025년 20,289명(32항차)이었으나 2026년 1~9월에는 148,811명(89항차)이 관광상륙을 하였고,⁶⁾ 여수항은 2023년 2,320명(5항차), 2025년 5,229명(11항차), 2026년 1~9월 25,879명(16항차)이 관광상륙 하였다.

[최근 3년간 크루즈 국내 입항편 관광객 현황]

(단위: 회, 명)

연도별		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	기타
23	항차	71	105	12	5	6	5
	관광객	101,304	150,922	12,152	2,320	6,823	296
24	항차	274	118	15	4	4	8
	관광객	640,892	152,903	17,370	1,225	6,623	2,075
25	항차	322	208	32	11	4	11
	관광객	734,150	152,743	20,289	5,229	5,839	731
26. 9.	항차	221	328	89	16	4	16
	관광객	538,731	471,160	148,811	25,879	2,130	4,88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6) 또한, 법무부는 2027년 인천항에 대형 크루즈인 MSC 벨리시마가 국내 최초로 모항 형태로 입항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총 18항차 모항(3만명), 113항차 기항(40만명)으로 2027년 43만명 입국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지역 선정 시 크루즈 입항 항차 수, 입항하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입장이나, 항차당 평균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이미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항을 제외하고 2026년 1~9월 기준 인천항 1,672명, 여수항 1,617명으로 부산항의 1,436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항차당 평균 크루즈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9월
제주(기설치)	1,427	2,339	2,280	2,438
인천	1,013	1,158	634	1,672
여수	464	306	475	1,617
부산	1,437	1,296	734	1,436
속초	1,137	1,656	1,460	533
기타	59	259	66	30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그 설치 목적상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을 때 심사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므로, 연간 총 관광객 수뿐 아니라 1회 입항 시 집중되는 인원(항차당 관광객), 관광객의 편의성, 관광객 증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설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관광상륙허가를 자동출입국심사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크루즈 입항 항차 수, 관광객 수뿐 아니라 항차당 관광객, 관광객의 편의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터미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설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¹⁾ 사업은 교정교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11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113억 7,400만원 대비 6,000만원 증액되었다.

[2027년도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정교화	11,246	13,260	13,260	13,834	574	4.3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508	11,374	11,374	11,434	60	0.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그에 따라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사업으로, 동 사업의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2-301의 내역사업

[2027년도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936	2,126	2,126	2,126	-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예산안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대상자에 판매, 알선, 교부, 구매 및 소지 사범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과 연동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사업 예산으로 법무부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수명령 교육이 있다.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²⁾ 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이다.

법무부는 2027년 예산안의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전년도 이수명령 대상자 2,048명을 기준으로, 2027년도 증가 예상 인원 2,800명 및 미결 수용자 2,128명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7년도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사업 편성 근거]

구분	명수
이수명령 대상자	2,048명
증가 예상 인원	2,800명
미결수용자	2,128명
합 계	6,976명

자료: 법무부

그런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예산은 법률개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 따라 실제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산안 편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이수명령은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은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재는 마약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수명령이 부과되고, 매매나 알선, 운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범죄행위(밀수·밀매·소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처분을 하거나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⁴⁾

그런데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증가 예상 인원(2,800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이들에 대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56, 제안일자 2025.4.28.

4) 2025년 8월 18일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9월 기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2026년 8월 기준 집행현황]

대상자	예산안상 명수	2026년 8월 기준 실제 프로그램 집행 명수
이수명령 대상자	2,048명	1,063명
증가 예상 인원	2,800명	-
미결수용자	2,128명	646명

자료: 법무부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증가 예상 인원(2,800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해당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운반하는 유통사범에게도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무부의 경우 마약류사범의 범위에 ‘재배, 제조, 사용, 소유, 수출입, 매매의 알선, 성분 추출, 보관, 처방전 발급, 제공’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마약류사범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있어⁵⁾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이후 법원이 교육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 교육 대상자인 투약 등의 경우 단약동기효능감, 회복단계 척도를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판매, 알선, 교부, 구매 및 소지 사범의 경우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 교육대상자와 증가 예상 인원⁶⁾에 대한 재복역률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지 않아⁶⁾ 이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은 위 개정안이 의결된다는 전제 하에 제조·판매·알선·교부·구매·소지 사범을 교육대상자로 보고 편성하였으나, 해당 법률안은 예산안 국회 제출일 기준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이므로, 해당 법률의 심사 진행 과정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사범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6) 법무부는 마약류수용자 전체의 재복역률만 관리하고 있고, 이를 투약, 운반 등으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가. 현 황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¹⁾은 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증위원회 운영,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 및 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00만원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822	947	947	991	44	4.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전자공증의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이 감소하고, 인지도가 저조함에도 연례적으로 신문·인터넷 광고와 책자 발간 등 동일한 방식과 금액으로 전자공증제도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용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 방식 및 대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사업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증이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²⁾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8-300

2)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전자공증제도는 온라인을 통한 공증을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되었고, 2017년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다만 초기의 전자공증은 온라인 촉탁만 가능했을 뿐,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후에야 공증을 발급받을 수 있던 불편함이 있어, 법무부는 2018년 6월부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는 화상공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된 지 16년, 화상공증제도가 실시된 지 8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자공증의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자공증 건수는 2023년 3,128건에서 2024년 2,876건, 2025년 2,719건으로 줄고 있으며, 전체 공증 건수 대비 비중은 매년 0.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이용률이 전년도보다 더 감소하여 0.2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전자공증 건수 및 이용률 현황]

(단위: 건)

구분	'21	'22	'23	'24	'25	'26.8.
공증건수(A)	831,125	903,816	888,512	905,051	891,966	617,680
전자공증건수(B)	2,641	2,763	3,128	2,876	2,719	1,634
화상공증	2,605	2,733	3,101	2,849	2,693	1,617
기타	36	30	27	27	26	17
이용률(B/A*100)	0.3178%	0.3057%	0.3520%	0.3178%	0.3048%	0.2645%

주. '기타' 항목은 장비나 프로그램 등 문제로 화상공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한 후 공증문서 등은 원격으로 발급받는 것을 뜻함.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저조한 이용률, 효과 분석이 어려운 홍보예산 집행 등을 지적하였고, 시민 인식조사와 시스템 만족도 조사의 정례화, 전자공증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³⁾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3) 2024회계연도 전자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시민 인식 조사·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지정공증인 확대·전자확정일자 도입, 전자공증 기능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이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이유로 ① 전자공증시스템의 사용 방식이 불편하고, ②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시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자공증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다⁴⁾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전자공증시스템 사용 방식이 불편하여 이용이 저조하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기능 추가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나, 전자공증제도의 단점 조사결과 시스템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한다⁵⁾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인지도 저조가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홍보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7년 신문, 인터넷 등 광고비(4,400만원), 전자공증 안내 책자 및 자료집 발간(9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전자공증제도의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상 홍보 수행 방식(신문, 인터넷 등 광고와 책자 발간) 및 액수와 동일하여, 연례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증의 이용 건수와 이용률이 2023년 이후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홍보 방식이 인지도 및 이용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⁶⁾

따라서,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인지도 조사 결과에 맞추어 홍보 대상과 매체를 조정하여 효과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전자공증제도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법무부의 2025년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25.11.) p.22에 따르면, 전자공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2.5%에 불과하다.

5) 법무부, 2025년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25.11.) p.32

6)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문서 인증에 대해 이루어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공정증서의 작성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인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208210)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해당 법률 통과시 전자공증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나, ① 현행법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촉탁인의 확인과 의사의 진실성 확인이 중요하므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인증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증서 작성을 대면이 아닌 화상 방식으로 수행할 수요가 충분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

현황

법제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법제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700억 3,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4억 4,400만원(15.6%) 증가하였다.

[2027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4,826	60,588	60,588	70,032	9,444	15.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한편, 법제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2026년 207억 7,100만원 → 2027년 242억 4,300만원), ②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2027년 14억 8,200만원).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법제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사업이고,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이 있다.

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사업에서는 형벌 합리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②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법제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	-	1,482	1,482	순증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20,771	20,771	24,243	3,472	16.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감사원

1

현 황

감사원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감사원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9억 6,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200만원(11.8%) 증가하였다.

[202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95.1	863.0	863.0	965.0	102.0	11.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494억 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1억 2,500만원(3.6%) 증가하였다.

[2027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1,196	144,365	144,365	149,490	5,125	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감사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 실적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 5.23억원을 제출하였고(2026년 23억원), 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 세미나·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 경비 등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지원 사업 예산이 2026년 대비 29.4% 증액되었으며(2026년 3.16억원 → 2027년 4.09억원), ③ 감사원 감사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감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공감 감사참여단(국민감사어젠다회의) 운영 및 주요 감사결과의 홍보영상 제작 등이 신규 반영되어 감사활동경비 사업 예산이 증액(2026년 151억원 → 2027년 158.5억원)되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감사원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¹⁾은 없다.

1) 전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6억 7,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0억 1,800만원(△30.4%) 감소하였다.

[2027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2,748	29,695	29,695	20,677	△9,018	△3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이 증액되었다(2026년 14억 700만원 → 2027년 15억 100만원).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이 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07	1,407	1,501	94	6.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1

현황

헌법재판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4,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81.2%) 감소하였다.

[202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06	245	245	46	△199	△81.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08억 3,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7억 2,600만원(14.0%) 증가하였다.

[202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6,676	62,109	62,109	70,835	8,726	14.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에서 결정문 작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②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임차청사관리를 위하여 10억 6,400만원, 노후 순환펌프 교체 공사를 위하여 1억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③ 국제교류 사업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청사 임차를 위하여 2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다.

헌법재판소의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보수등, 재판활동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해외연수, 국제교류,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이 있다.

①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업무지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등을 위하여 2억 1,600만원 증액(36.2%)되었고, ②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임차청사관리 등이 포함되어 14억 700만원 증액(34.9%)되었으며, ③ 국제교류 사업은 베니스위원회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등을 위하여 4억 1,300만원 증액(74.4%)되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개)	국선대리인보수등	121	121	131	10	8.3
	재판활동운영지원	597	597	813	216	36.2
	본부운영지원	4,033	4,033	5,440	1,407	34.9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856	1,856	2,001	145	7.8
	해외연수	604	604	786	182	30.1
	국제교류	555	555	968	413	74.4
	재판자료확충	340	340	409	69	20.3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8,424	8,424	9,606	1,182	14.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대법원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 및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0.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376억원, 등기특별회계 2,582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929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713,383	801,618	801,618	795,800	△5,818	△0.7
- 일반회계	495,323	528,114	528,114	537,639	9,525	1.8
- 등기특별회계	218,060	273,504	273,504	258,161	△15,343	△5.6
기 금	252,742	285,624	285,624	292,941	7,317	2.6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52,742	285,624	285,624	292,941	7,317	2.6
합 계	966,125	1,087,242	1,087,242	1,088,741	1,499	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6,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4억원(5.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2,402억원, 등기특별회계 2,375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699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178,647	2,333,157	2,333,157	2,477,720	144,563	6.2
- 일반회계	1,958,086	2,095,880	2,095,880	2,240,248	144,368	6.9
- 등기특별회계	220,561	237,277	237,277	237,472	195	0.1
기 금	99,624	174,016	174,016	169,884	△4,132	△2.4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9,624	174,016	174,016	169,884	△4,132	△2.4
합 계	2,278,271	2,507,173	2,507,173	2,647,604	140,431	5.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예산안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8,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억원(0.8%)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26억원, 등기특별회계 2,912억원이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95,323	551,610	551,610	542,598	△9,012	△1.6
등기특별회계	263,073	288,517	288,517	291,226	2,709	0.9
합 계	758,396	840,127	840,127	833,824	△6,303	△0.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5,31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71억원(6.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2,402억원, 등기특별회계 2,912억원이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58,086	2,095,880	2,095,880	2,240,248	144,368	6.9
등기특별회계	238,452	288,517	288,517	291,226	2,709	0.9
합 계	2,196,538	2,384,397	2,384,397	2,531,474	147,077	6.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대법원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1억원 (43.4%) 감소하였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86,156	572,219	572,219	324,146	△248,073	△43.4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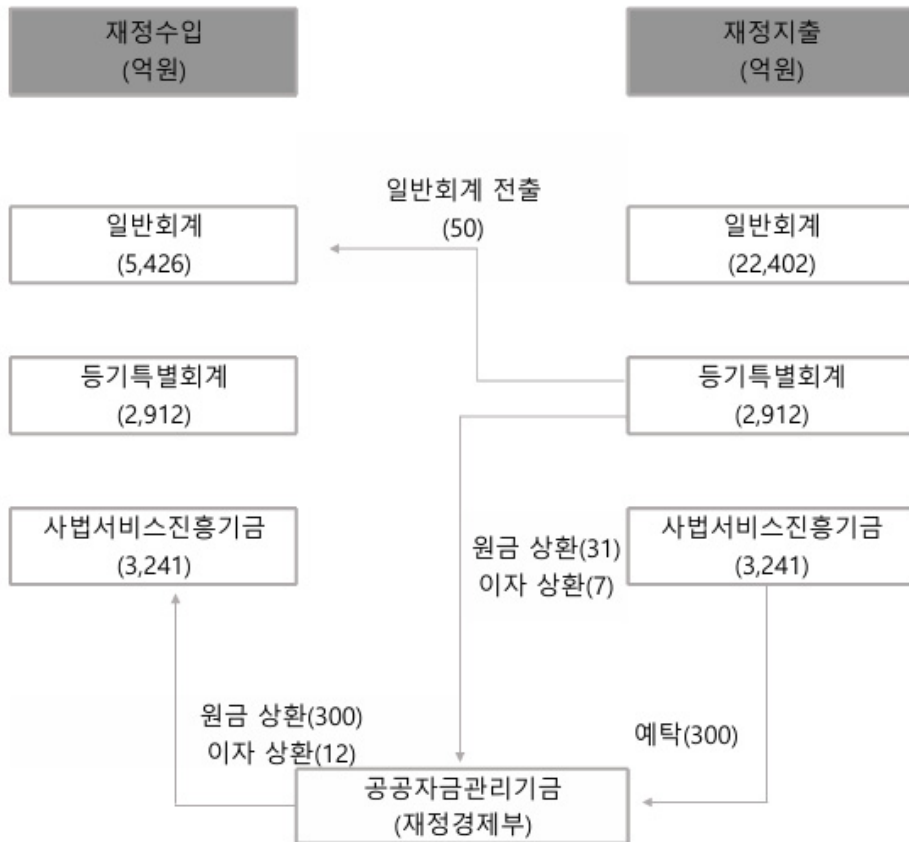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50억원이 전출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8억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을 예탁하고, 312억원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 받는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대법원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법원 청사 내 공간재배치와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청사 임차료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351억 200만원), ②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경우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모바일공무원 증 및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증액되었으며(2026년 828억 4,600만원 → 2027년 950억 9,100만원), ③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2026년 3월 미래등기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2026년 281억 2,500만원 → 2027년 296억 5,100만원).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법률의 개정·시행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사 내 공간 재배치 사업은 증원되는 대법관의 사무실 면적과 향후 추가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본부운영지원, 법원시설관리 등, 사법업무 전산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①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부족분 해소 및 상용임금 치우개선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판사정원법·상생협력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사법부 공간 확충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며, ③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은 신규 보안장비·전산장비 확충 및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한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⑤ 소송구조 지원 사업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인상 및 지원 물량 확대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⑥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추가 사업물량을 반영하여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본부운영지원	123,321	123,321	141,130	17,809	14.4
	법원시설관리 등	91,710	91,710	113,662	21,952	23.9
	사법업무 전산화	82,846	82,846	95,091	12,245	14.8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3,413	3,413	5,401	1,988	58.2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2개)	소송구조 지원	6,857	6,857	10,011	3,154	46.0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748	3,748	4,906	1,158	30.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¹⁾은 가정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124	17,061	17,061	17,166	105	0.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	-	-	662	66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332-303의 내역사업

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크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¹⁾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방문	45,806	48,486	51,309	58,218	44,100
	인터넷	1,099,953	1,178,008	5,342,338	5,766,224	4,830,567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방문	53,951	51,263	48,117	50,567	36,582
	인터넷	1,153,904	1,229,271	5,390,455	5,816,791	4,867,149
합 계		1,199,710	1,277,757	5,441,764	5,875,009	4,911,249

주: 1) 8월 말 기준

자료: 대법원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²⁾에 따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법원 방문 등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해 연말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을 먼저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제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관련 제도를 마련한 선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법률 개정애 앞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7년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업체 선정	분석	설계	개발	구현
'26.10.~12.	'27.1.~2.	'27.3.~4.	'27.5.~11.	'27.1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업무 및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데이터 모델 설계 화면 및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전개 및 서비스 오픈

자료: 대법원

그러나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³⁾는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등은 후견등기관에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되, 후견등기관은 해당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20대 국회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뿐만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까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인터넷으로 전제 발급을 하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정하여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고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다.

3)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1.~11. (생 략)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제20대 국회 제354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제2차, 2017.9.26.) p.25

따라서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 개정애 앞서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정한 인터넷 발급 범위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발급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개정 및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 분담금의 국제기구별 실제 파견조건 및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 분담금 사업¹⁾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및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법관 등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 분담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639	7,763	7,763	9,056	1,293	16.7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 분담금	-	-	-	632	63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법관 등의 ILO 파견은 구체적인 파견 직급 및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협의 및 파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WIPO 파견은 법관 1인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가족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ILO 파견 분담금으로 3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금액은 ILO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파견 직급 및 실제 소요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WIPO 파견 분담금에 준해서 산정한 것이다. 현재 ILO와는 파견 직급, 분담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40-361의 내역사업

금 내역 등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ILO로부터 파견자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정서만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ILO와의 협의를 통해 파견 직급, ILO가 적용하는 급여, 기타 비용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과 현재 편성된 예산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ILO와의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관한 협의 및 MOU 체결이 지연될 경우 파견 대상자 선발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어 2027년 연초부터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027년도 법관 등의 ILO 파견 분담금 예산내역]

(단위: 원, 스위스프랑)

구분		현지화	원화 ¹⁾
급여	순기본급	79,419.85	150,103,517
	지역 조정금(조정계수 67.60%)	53,687.80	101,469,942
	소 계	133,107.65	251,573,459
보험	질병 보험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	5,443.20	10,287,648
	업무상 재해	201.00	379,890
	소 계	5,644.2	10,667,538
귀부임 여비	항공료 등(비즈니스)	7,574.00	14,314,860
기타	의료지원, 직무훈련, 언어교육	3,000.00	5,670,000
합 계		149,325.85	282,225,857
행정수수료(12%)		17,919.10	33,867,099
총 합		167,244.95	316,092,956

주: 1) 1스위스프랑 = 1,891원(26.3.31.자 대원화 환율)

자료: 대법원

한편, 대법원은 WIPO에 P4급 법관 1명을 1년간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분담금 3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기본급 1억 5,010만원, 지역조정금 1억 147만원, 질병보험 및 업무상 재해 관련 비용 1,067만원, 귀·부임 여비 1,431만원, 의료지원·직무훈련·언어교육비 및 행정수수료 등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WIPO와 협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후보자 선발 이후 WIPO가 실제 임용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법원행정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비용에는 파견자의 급여 및 수당 외에도 동반가족의 항공임 등 실제 임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법원행정처와 WIPO 간 양해각서(MOU) 초안]

3.2. 임용 절차

3.2.1. 선발 절차가 완료되면, WIPO는 NCA(법원행정처)에 임용 제안과 함께 해당 임용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을 통지한다. WIPO 인사 규정 및 규칙(Staff Regulations and Rules)에 따라, 해당 비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급여 및 수당
- (b) 직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행 경비 및 여행 관련 권리
- (c) 의료보험 비용
- (d) 유엔 공동직원연금(UNJSPF) (최초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e) 퇴직과 관련된 제반 권리
- (f) WIPO 인사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발생하거나 해당 직원의 신분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식별 가능한 모든 비용

3.2.2. NCA는 이로써 선발된 후보자의 임용과 관련된 모든 식별 가능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자료: 대법원

그럼에도 현재 예산안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본인 1인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선발된 법관의 가족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법관 등의 국제기구 파견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실제 파견 조건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대법원은 ILO 파견의 경우 파견 직급 및 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파견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WIPO 파견의 경우 가족 동반 여부 등 실제 파견조건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7년도 분담금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요 사업¹⁾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필수시설 및 집무실 등의 설치와 공간 확보를 위한 대법원 청사 내 공간 재배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99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56,817	91,710	91,710	113,662	21,952	23.9
사법부 공간 최적화	-	9,194	9,194	50,611	41,417	450.5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요	-	-	-	9,956	9,95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증원되는 대법관의 사무실 규모와 향후 추가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재배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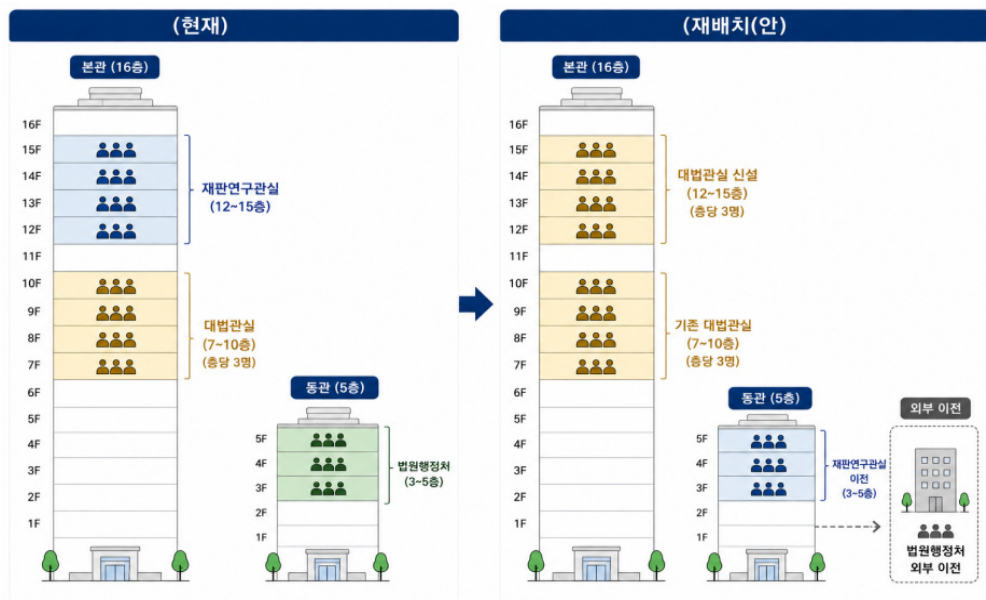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증원하여 총 26명의 대법관을 두게 된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53-411의 내내역사업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 본관 7~10층의 각 층에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본관 12~15층은 재판연구관실로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8년 대법관 4명 증원에 대비하여 2027년 중 본관 12층에 3명, 13층에 1명의 대법관 집무실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관 12~13층의 재판연구관실 일부를 법원행정처 동관으로 이전하고, 동관 3~5층에서 근무 중인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는 외부 임차사무실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법원 청사 재배치(안)]



자료: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관련 2027년도 소요예산은 총 99억 5,600만원으로, 대법관 집무실 신설 22억 5,100만원, 재판연구관실 이전 27억 8,900만원,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49억 1,600만원이다. 이처럼 대법관 증원에 따른 집무실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공간의 재배치와 외부 사무실 임차에도 예산이 소요된다.

[2027년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27년도 예산안
대법관 집무실 신설	2,251
재판연구관실 이전	2,789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4,916
계	9,956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대법관은 집무실 133㎡, 전속재판연구관실(2인) 78㎡, 비서관실(4인) 55㎡ 등 총 266㎡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증원되는 대법관에게는 집무실 113㎡, 전속 재판연구관실(2인) 60㎡, 비서관실(4인) 40㎡ 등 총 213㎡의 사무실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대법관의 사무실 면적 266㎡보다 축소된 규모이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관급 사무실의 면적은 집무실, 접견실 및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여 165㎡이고,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²⁾도 보좌진 9인의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165㎡이다.

[대법관, 장관급 및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 비교]

(단위: ㎡)

구분	현재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장관급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	266	213	165	165

자료: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사무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사무실 면적에 필수 재판업무 지원인력인 전속재판연구관 및 비서관의 업무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관급 및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2)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은 의원회관 구관 기준이며, 신관 기준으로는 148.76㎡이다.

다만, 대법관 사무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재판업무의 특성, 지원인력의 규모, 청사 공간 활용 여건 및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9년과 2030년에도 각각 4명씩 총 8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으로, 향후 대법관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재판연구관실 및 법원행정처 사무실의 연쇄적인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전체의 공간 활용계획과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되는 대법관의 사무실 규모와 청사 재배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사무실 규모는 실제 업무 특성과 지원인력 규모, 기존 청사의 공간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9년과 2030년에도 각각 4명씩 총 8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으로, 향후 대법관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재판연구관실 및 법원행정처 사무실의 연쇄적인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전체의 공간 활용계획과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되는 대법관의 사무실 규모와 청사 재배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